

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3. 11(목)
문교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0. 2. 2.
- 나. 제안자 : 오홍철 의원 외 9인
- 다. 회부일자 : 2010. 2. 2.
- 라. 상정일자 : 2010. 3. 4 (제182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)
 - 제안설명 : 오홍철 의원
 - 검토보고 :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
 - 질의 및 토론
 -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종합문화회관이 2010년 3월말에 건립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개관을 앞두고 이용료 감면 규정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을 증진시키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부대시설 사용료와 기타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되 65세 이상인 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와 그 유·가족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50% 감면 적용 규정을 신설함.(안 제5조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25일 개관되는 노인종합문화회관의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 증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임.

주요 내용

○ 노인복지시설 부대시설사용료 및 기타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 규정 (안 제5조제3항)

-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종합문화회관의 부대시설 사용료 및 기타 프로그램 수강료에 따른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, 감면대상은 관계 법령에 의해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, 국가유공자와 그 유·가족, 5·18민주유공자 및 그 유·가족, 의사상자와 그 유·가족,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해 50%를 감면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음.

다만,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안 제5조제3항의 단서조항 중 ‘활인’을 ‘감면’으로 하고, 안 제5조제3항제7호의 ‘기타’를 ‘그 밖에’로 수정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알기 쉽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○ 김용근, 이명숙, 최만용, 박창규, 오흥철, 정종섭 위원

- 감면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는?
- 노인종합문화회관의 주 이용대상자는 누구인지?
- 감면 규정 검토 시 유사한 개별 시설과의 비교자료가 필요할 것임
- 일일 예상 이용인원은?

< 답 변 >

○ 오홍철 의원

- 감면 규정에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명기한 이유는 노인 연령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감면대상자를 구별하고자 한 것임.

○ 가정복지국장 장부연

-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이용 가능하며, 수영장 등 일부 시설은 일반 시민 모두 이용 가능
- 일일 프로그램 이용인원 2,000명, 수영장은 800명으로 예상되며, 향후 이용인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.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김용근, 이명숙, 최만용, 박창규, 오홍철, 정종섭 위원

나. 반대 : 없 음

6. 수정안 요지

- 안 제5조제3항의 단서조항 중 ‘할인’을 ‘감면’으로, “않는다”를 “아니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7호의 ‘기타’를 ‘그 밖에’로 한다.

7. 심사결과

- 수정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기타사항

- 특이사항 없음.

붙임 : 1. 수정안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

3.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4. .신 · 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3항의 단서 중 “할인”을 “감면”으로, “않는다”를 “아니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사용료)”를 “(사용료 등)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부대시설 사용료와 기타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%를 감면한다. 다만,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65세 이상인 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·그 유족과 가족
4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5·18민주유공자·그 유족과 가족
5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자·그 유족과 가족
6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
7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사용료) ① (생략)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사용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부대시설 사용료와 기타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%를 감면한다. 다만,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65세 이상인 자</u> 2. 「<u>장애인복지법</u>」에 의한 장애인 3. 「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·그 유족과 가족 4. 「<u>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</u>」의 적용을 받는 5·18민주유공자·그 유족과 가족 5. 「<u>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자·그 유족과 가족 6. <u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</u> 7. <u>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</u>